

1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보증규정중개정규정(안)

주요 골 자

-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는 WORKOUT 신청을 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의결등을 받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안 제6조제1항제2호)
- 나.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등을 요하는 사유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1항제10조)
- 다. 심사위원회 의결등을 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시 담보물 예치비율을 보증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라.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대표자입보시 경영실권자나 과점주주의 입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 마. 보증채무약정시 한도거래약정을 허용하고자 “매건별료”를 삭제함(안 제61조제1항)
- 바. 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 채권관리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항)

보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신청 또는 선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중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의 경우”를 “인·허가보증의 경우”로 한다.

1. 하자보수보증, 감리비에치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의 10퍼센트.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담보물은 보증기간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입보한 경우 제61조제1항중 “매건별로 보증신청인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보증신청인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월 일 부터 시행하되, 1999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보증의 금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채권관리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승계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보증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증의 금지) ①보증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시행자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동시행자중 1인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을 금지한다.</p> <p>1.~4. (생략)</p> <p>5.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WORKOUT) 신청을 한 경우 (단서신설)</p> <p>6~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6조(심사위원회 의결등) ①주택분양보증 및 주택임대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은 보증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약정을 체결한 경우 (단서신설)</p> <p>3~9. (생략)</p>	<p>제5조(보증의 금지) -----</p> <p>-----</p> <p>-----</p> <p>-----</p> <p>-----</p> <p>1.~4 (현행과 같음)</p> <p>5. -----</p> <p>-----</p> <p>----- . 다만, <u>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를 제외한다.</u></p> <p>6~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심사위원회 의결등) ①-----</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 다만, <u>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신청 또는 선정의 경우를 포함한다.</u></p> <p>3.~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안)
<p>10.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의 청구가 접수된 후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단서신설)</p> <p>11. ~13. (생략)</p> <p>②분양보증 이외의 보증은 보증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1(제7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담보규정에 의한 담보(이하 “담보물”이라한다)를 취득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시행자 상호간 또는 시행자와 시공자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시행자중 1인 또는 시공자는 제1항 각호의 1 및 제5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1. <u>감리비에치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의 10퍼센트</u></p> <p>2. <u>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의 30퍼센트</u></p> <p>③ (생략)</p> <p>제10조(연대보증인) ①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를 말한다)를 개인연</p>	<p>10. ----- ----- . <u>다만,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u></p> <p>11~1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p>1. <u>하자보수보증 감리비에치보증의 경우</u> ----- . <u>이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담보물은 보증기간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할 수 있다.</u></p> <p>2. <u>인·허가보증의 경우</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연대보증인) ① ----- ----- ----- ----- ----- -----</p>

현행	개정 (안)
<p>대입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p>
<p>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그 재투자기관</p> <p>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p> <p>3.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신탁회사</p> <p>4. 기타 경영실권자나 과점주주가 없는 경우 (신설)</p>	<p>1. ----- -----</p> <p>2. -----</p> <p>3. ----- -----</p> <p>4. -----</p> <p>5. <u>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입보하는 경우</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이외에는 교체를 허용할 수 없다.</p>	<p>③ ----- -----</p>
<p>1. 부도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p> <p>2. 법인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보증의 연대보증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p>	<p>1. ----- -----</p> <p>2. ----- ----- -----</p>
<p>(신설)</p>	<p>3. <u>법인의 대표자입보를 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의 입보로 교체하는 경우</u></p>
<p>제61조(보증채무의 약정) ① 회사가 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u>매건별로 보증신청인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 또는 공정증서부약속어음(이하 “당좌수표등”이라 한다.)을 징구하여야 한다.</p>	<p>제61조(보증채무의 약정) ① ----- ----- <u>보증신청인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u>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